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Implications for the CISG's Applicability concerning U.S. Court's Cases

한나희(Na-hee Han)

주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박사후 연구원

하충룡(Choong-lyong Ha)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미국변호사, 뉴욕주)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CISG의 법적성격	참고문헌
III. CISG의 적용요건인 국제성과 영업소	ABSTRACT
IV. 당사자자치에 의한 CISG 적용배제	

국문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계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CISG 적용, 자동집행조약, 영업소, CISG 배제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21+ (지연전략산업과 연계한 FTA통상비즈니스 전문인력양성사업팀)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임.

I. 서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의류, 프랑스의 와인 등의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나 그 이행에 당사자들 간 이견이 발생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엔 우리나라의 관련법을, 상대방은 자국의 관련법을 적용하길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법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준거법 조항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고 있다. 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의 해결을 통하여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 CISG)¹⁾이 1980년 제정, 1988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2월 17일 CISG에 가입,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²⁾ 특히, CISG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주요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85개국의 체약국이 있으며, 이들과의 물품매매거래에는 CISG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CISG의 체약국과의 거래에서는 명시적으로 당사자들이 CISG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가 협약의 취지대로 CISG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이다.³⁾ 상이한 법체들이 뒤섞여져 있어 이를 정착시키는 과정은 매우 힘들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과거 미국 통일상법전(이하 UCC)⁴⁾ 제2편을 국제계약의 모델이라고까지 하였다.⁵⁾ 뿐만 아니라 CISG는 다양한 법계를 수용하고 있는데, 보통법 국가인 미국에서 성문법인 CISG를 어떻게 수용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CISG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즉, CISG는 국제조약이다.⁶⁾ CISG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핵심은 체약국에서의 CISG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적인 해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2) 임재욱,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06, p.160.

3) 손태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상의 통일성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의 태도와 그 개선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08, p.400.

4) U.S. Uniform Commercial Code

5) 김선국(a), “CISG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2014-5)의 동향-1”,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0, p. 288. 각주 5 재인용.

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357.

석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상충하는 판결들을 검토하고 해결할 권한이 있는 범국가적인 기구 혹은 최고법원의 부재이다.⁷⁾ CISG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한 노력은 계약국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셈이다. 특히 판례법국가인 미국이 UCC와 CISG 규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UCC의 선례에 따라 CISG를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스스로 CISG의 통일적인 해석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있어 전 세계적인 통일법을 만들었다는 극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의 실무가들과 법률가들이 실제로 CISG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Kina Grbic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CISG 본문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의미까지 제기하였다.⁸⁾ 사실 국내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⁹⁾ 우리나라에서 CISG가 발효된 지도 10여년이 지나고 있으며, 미국은 30여년이 흘렀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CISG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연구하고 관련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보통법 국가에서의 성문법 수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무역실무가들이 CISG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ISG는 계약국 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적용배제를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CISG 적용과 관련한 방대한 범위 가운데 CISG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첫 단추인 국제성 및 영업소에 대한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미국법원의 입장을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¹⁰⁾ 이와 더불어 CISG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유효한 합의배제와 관련한 법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CISG 적용여부에 관한 검토에 앞서, CISG가 미국 내에서 가지는 법률적 지위와 그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법원이든 법률가든 CISG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CISG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7) Susan J. Martin-Davidson, "Selling Goods Internationally: Scope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 *Mich. St. J. Int'l L.* 657, 2008-2009, p.658.

8) Kina Grbic, "Putting the CISG Where It Belongs :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ouro Law Review*, 29 *Touro L. Rev.* 173, 2012, p.173.

9)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05, p.208.; 김용의, "CISG를 적용한 최근 미국 판례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1, p.138.; 서현제, "주요국에서의 CISG의 적용과 우리의 과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8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p.80.

10) 대부분의 사례는 Westlaw를 통하여 검색하였음을 밝혀둔다.

II. CISG의 법적성격

1. 자동집행조약으로서 CISG

먼저, CISG가 어떤 성격의 법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왜 CISG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CISG는 국제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이다.¹¹⁾ CISG는 상이한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 간 물품 매매에 적용된다.¹²⁾ 미국은 CISG에 1981년 8월 서명하였고, 1986년 10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비준하여 1988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¹³⁾ 미국법에 의거 국제조약은 자기집행(self-executing)조약과 비자기집행(non-self-executing)조약이 있다. 비자기집행조약은¹⁴⁾ 미국시민에게 구속력을 발휘하기 전에 연방입법을 요하는 반면, 자기집행조약은 추가로 연방입법을 요하지 않으며, 비준절차를 완성시키기만 하면 미국법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된다.¹⁵⁾ 명시적으로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조약이 자기집행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미국 법원과 많은 학자들은 CISG를 자기집행 조약으로 보고 있다.¹⁶⁾ CISG는 의회의 별도 입법조치 없이 연방법으로써 미국법원에서 구속력을 갖는 자기집행조약 즉, 자동발효조약이다.¹⁷⁾ 따라서 미국 당사자와 CISG 계약국의 당사자가 물품매매를 하는 경우, UCC가 아닌 CISG가 실체법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¹⁸⁾ 바꾸어 말하

11) *Genpharm Inc. v. Pliva-Lachema a.s.*, 36 F.Supp.2d 49, 53-54 (E.D.N.Y. 2005).

12) *BP Oil Int'l, Ltd. v. Empresa Estatal Petroleos de Ecuador*, 332 F.3d 333, 336 (5th Cir. 2003); *Chateau des Charmes Wines Ltd. v. Sabate USA Inc.*, 328 F.3d 528, 530 (9th Cir. 2003).

13)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14) 한·미 FTA의 경우, 의회의 별도 입법이 필요한 비자기집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15) James E. Bailey, "Facing the Truth : Seeing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an Obstacle to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32 *Cornell Int'l L. J.* 273, 1999, p.281 조약이 자기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방대법원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WHITNEY et al. v. ROBERTSON, Collector*, 8 S.Ct. 456, 458 (1888). "If the treaty contains stipulations which are self-executing, that is, require no legislation to make them operative, to that extent they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a legislative enactment."; *United States v. Postal*, 589 F.2d 862, 877 (5th Cir. 1979) "Apart from those few instances in which the language of the provision expressly calls for legislative implementation or the subject matter is with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ongress, the question is pure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16) *Delchi Carrier v. Rotorex Corp.*, 71 F.3d 1024, 1027 (2d Cir. 1995) "...the CISG...is self-executing agreement..."; Christopher C. Kokoruda,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It's Not Your Father's Uniform Commercial Code", *Florida Bar Journal*, 85-JUN Fla. B.J. 103, June 2011, p.103. "Under U.S. law, the CISG is considered to be self-executing treaty"

17) *Chicago Prim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408 F.3d 894, 897 (7th Cir. 2005).

18) Christopher C. Kokoruda, *op. cit.*, June, 2011, p.103.

면, 미국과 다른 계약국의 당사자와의 물품매매에 대한 준거법은 UCC 제2편이 아닌 CISG이다. 더욱이 CISG는 연방법우월조항이며,¹⁹⁾ 모든 주의 준거법에 우선한다.²⁰⁾ CISG는 전적으로 독립한 형태의 국제계약법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ISG는 헌법 제6조²¹⁾에 따른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약체결 시 별도의 입법사항이 해당조약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한 조약을 발효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²²⁾ 국제물품매매에 적용과 관련하여서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CISG가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물품매매법이라는 인식은 매우 약하다.²³⁾

2. 관련 판례

*Medellin v. Texas*²⁴⁾ 사건은 미국연방대법원에서 비엔나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다. CISG와 같은 국제조약은 자기집행력이 있거나 의회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내법과 같이 미국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다.²⁵⁾ 의회가 CISG를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자기집행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법으로써 강제할 수 있다. *Medelli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기집행력을 갖기 위해 조약은 그 자체로 ‘자기집행력’을 갖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약이 자기집행력을 갖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문구들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약상 문구가 조약에 협상한 대통령과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갖는지를 확인한 의회의 결정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²⁶⁾ *Chi. Prime Packers* 사건과²⁷⁾ *VLM Food Trading Intern., Inc.* 사건에서 ‘CISG는 미국과 다른 서명국간 “자기집행조약”으로써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 주법에 우선한다’고 하였다.²⁸⁾ *U.S. Nonwovens Corp.* 사건에서도 법원은 *American Mint LLC* 사건

19) U.S. Const. art. VI. (2)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20) Kina Grbic, *op. cit.*, p.177.

21)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2) 이재민, “우리 법원에서의 통상협정의 해석과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pp.89-90; 즉,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제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일원주의 입장을 띠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국제조약을 자기집행력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원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의회의 권력을 강조하는 영국법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미법국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23) 김용의, 전계논문, p.143.; 본 논문의 각주 5 참조.

24) *Medellin v. Texas*, 128 S.Ct. 1346 (2008).

25) *Medellin v. Texas*, 128 S.Ct. 1346, 1351 (2008).

26) *Medellin v. Texas*, 128 S.Ct. 1346, 1356 (2008).

27) *Chi. Prime Packers, Inc. v. Northm Food Trading Co.*, 408 F.3d 894, 897 (7th Cir. 2005).

을²⁹⁾ 인용하면서 CISG의 범위 내에 속하는 소송사유는 CISG가 UCC 제2편의 규정이나 다른 주의 계약법에 우선하는 자동집행조약이기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⁰⁾ 따라서 CISG는 미국내에서 자기집행력을 가지므로,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합의를 하는 당사자가 상이한 두 계약국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UCC가 아니라 CISG가 자동적으로 실질준거법이 되는 것이다. 즉,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위치한 당사자 간 물품매매에 대한 계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³¹⁾ 미국 내에서 CISG는 연방법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사실 초기 *Delchi Carrier v. Rotorex Corp.*³²⁾ 사례를 살펴보면, ‘협약을 적용한 판례가 거의 없으므로, 우리는 협약 조항의 언어를 살펴보고 협약이 근거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검토한다’는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³³⁾ 또한 법원은 협약의 규정들에 작성된 문구가 UCC의 언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³⁴⁾ 이는 미국법원이 초창기 CISG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법인 UCC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 오류를 범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American Biophysics Corp.* 사건에서 캐나다 매수인과 미국 매도인은 준거법 조항에 로드아일랜드의 법을 따르고 강제되어진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였다. 해당 계약은 CISG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었다. 연방법원은 준거법조항으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³⁵⁾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부정확한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와 미국은 CISG의 계약국이기에 때문에 먼저 CISG 제1조에 의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로드아일랜드의 주법보다 연방법인 CISG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합의

CISG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인식에 대한 평가이다. CISG 체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왜 미국 법률단체가 CISG를 무시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면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하려고 하였다.³⁶⁾ 하지만 미국내 법률전문가들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판례들에 비해

28)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inois Trading Co.*, 748 F.3d 780, 787 (7th Cir. 2014).

29) *American Mint LLC v. GOSoftware, Inc.*, 2005 WL 2021248, 2 - 3 (M.D.Pa. 2005).

30) *U.S. Nonwovens Corp. v. Pack Line Corp.*, 4 N.Y.S.3d 868, 871, (N.Y.Sup 2015).

31) Christopher C. Kokoruda,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It’s not your Father’s Uniform Commercial Code,” *Florida Bar Journal*, 85-JUN Fla. B. J. 103, 2011, p. 103.

32) *Delchi Carrier v. Rotorex Corp.*, 71 F.3d 1024 (2d Cir. 1995)

33) 김용의, 전제논문, p.144.; *Delchi Carrier v. Rotorex Corp.*, 71 F.3d 1024, 1027 (2d Cir. 1995) p.1027, “Because there is virtually no case law under the Convention, we look to its language and to ‘the general principles’ upon which it is based.”

34) *Delchi Carrier v. Rotorex Corp.*, 71 F.3d 1024, 1028 (2d Cir. 1995).

35) *Am. Biophysics Corp. v. Dubois Marine Specialties*, 411 F. Supp. 2d 61, 62-64 (D.R.I. 2006).

36) Kina Grbic, *op. cit.*, p.188.

CISG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CISG는 정확하게 그 명칭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물품매매에 대한 국제상사계약에 적용하며, UCC 제2편은 상품의 국내거래 즉, 미국내에서 일어나는 상품의 거래를 규율한다. CISG는 근거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국제적 성격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³⁷⁾ 미국법에 의거 CISG는 자동집행조약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미국법원에서 협약의 구속력을 위하여 이후의 의회입법을 요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실체법으로서 직접 적용된다.³⁸⁾

사실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는 명백히 CISG가 자기집행조약임을 밝히고 있다.³⁹⁾ 즉, CISG의 법적성격은 자동발효조약이며 동시에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미국 무역실무가나 법률전문가들은 CISG가 미국법의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실무법률가들의 30%만이 CISG와 “적당히 친숙”하다고 하였으나, 판사들 간 비율은 더 암울하였다. 판사들의 82%가 CISG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⁴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CISG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ISG의 통일적인 해석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어려움은, 미국의 일부판결이 CISG 규정과 유사한 용어가 UCC 제2편에 있는 경우, UCC를 해석한 선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⁴¹⁾ 하지만 CISG와 관련한 판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항변적 태도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실제 CISG와 관련한 분쟁의 대다수는 계약국 가운데 독일이며, 미국은 이에 반도 미치지 않는다.⁴²⁾ 이처럼 보통법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문법 국가들보다 CISG의 활용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CISG art. 7(1).

38) Christopher C. Kokoruda,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It’s not your Father’s Uniform Commercial Code”, *Florida Bar Journal*, 85-JUN Fla. B. J. 103, 2011, p. 103.

39) Kina Grbic, *ibid.* p.191. ‘CISG는 자동집행조약으로 어떠한 형식도 없이 서명되고 비준되었다. 또한 미국법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CISG를 찾을 수 없도록 미국법 제15편의 부록에 어떤 소개나 코멘트도 없이 그냥 버려졌다’고 까지 하고 있다.

40) Howard O. Hunter, *Modern Law of Contracts*, March 2016, Thomson Reuters, § 23:5.

41) Susan J. Martin-Davidson, *op. cit.*, p.661.

42) <http://www.uncitral.org/clout/index.aspx#country> (2016년 11월 8일 방문). UNCITRAL 협정 및 모델법과 관련한 사건이 총 1,618건이며 그 가운데 CISG가 857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업무에 두고 전체 사례가 국가별로 독일이 218건, 미국이 113건, 한국이 25건임을 감안하더라도, CISG 활용측면에서 미국의 빈도가 독일에 비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다.

Ⅲ. CISG 적용요건인 국제성과 영업소

1. 국제성과 영업소의 판단

1) 국제성(CISG 제1조)

CISG는 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에만 적용된다.⁴³⁾ 기준이 계약국이 상이함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⁴⁴⁾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비계약국에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먼저, 제1조 제(1)항 (a)호에서는 당사자국이 모두 계약국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여 직접적용(direct applicability)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동항의 (b)호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계약국법이 되는 경우 적용된다고 하여 간접적용(indirect applicability)이라고 한다.⁴⁵⁾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매도인과 중국의 매수인이 물품매매를 하는 경우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CISG의 계약국이기 때문에 해당거래에 직접적용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해당 규정은 계약국간 물품매매계약에는 실체규정으로 CISG가 준거법이 되므로 국내의 국제사법규칙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⁴⁶⁾

계약국은 CISG에 가입하면서 제1조 제1항 (b)호 즉, 간접적용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⁴⁷⁾ 할 수 있다. 미국은 CISG 제95조의 유보를 하였으나,⁴⁸⁾ 우리나라는 유보선언을 하지 않았다. 비계약국인 타이완과의 거래를 생각해 보자. 타이완과 미국이 물품매매를 하여 국제사법에 의해 미국법이 준거법이 된 경우, 해당 거래에서 미국은 CISG의 계약국이지만 제95조에 의한 유보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UCC가 적용된다.⁴⁹⁾ 타이완과 우리나라가 물품매매를 하는데 국제사법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이 된 경우엔 해당거래에는 우리나라

43) CISG art. 1(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4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27.

45) Kristen David Adams · Cndace M. Zierd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siness Law Today, 2015-JUN Bus. L. Today 1*, June 2015 p.2.

46)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4), A/CN.9/SER.C/DIGEST/CISG/1, p.2. 'Convention prevails over recourse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47) CISG art. 95 Any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subparagraph (1)(b)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48) 그 외, 중국, 아르메니아, 체코공화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싱가포르, 슬로바키아가 CISG 제1조 제1항 (b)를 유보하였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참조바람. (2016.10.31. 방문)

49) 미국이 CISG 제95조 유보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9, pp.240-241.

라가 CISG의 체약국이고 95조에 의한 유보선언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CISG가 적용되는 것이다.⁵⁰⁾ 국제사법에 의해 준거법이 타이완법이 되는 경우엔 CISG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관할 기관인 법원이나 중재재판부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⁵¹⁾ 이는 국내의 국제사법원칙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으로 남게 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95조 유보를 하지 않은 CISG 체약국의 법으로 준거법이 확정되는 경우 간접적용의 방법으로 CISG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⁵²⁾ 한편, 독일은 CISG를 비준하면서, 제1조 제1항(b)를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선언을 한 체약국에 대하여는 제1조 제1항 (b)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을 하였다.⁵³⁾ 따라서 독일은 유보국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보국의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유보의 보호목적에 고려하여 유보국의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⁵⁴⁾

2) 영업소(CISG 제10조)

CISG는 물품매매계약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그러한 국제성의 판단기준은 서로 상이한 국가에 있는 영업소이다.⁵⁵⁾ 영업소의 결정은 해당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핵심요소가 된다. CISG는 제1조, 제12조, 제20조(2), 제24조, 제31조(c), 제42조(1)(b), 제57조(1)(a), 제69조(2), 제96조에서 당사자의 “영업소(place of business)”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CISG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으로서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이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다. 통상적으로 영업소라 함은 ‘상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조직의 중심을 이루며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의미하며, ‘독립적인 영업단위를 이루어 경영관리조직을 갖추으로써 그 영업활동에 관한 한 독립적인 관리가 행해지고 회계 등 경영효과가 집중’되어야 한다.⁵⁶⁾ 혹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일정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영업장소’라고도 한다.⁵⁷⁾

50) 김선국(b),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재산법학회』 제3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08, p.276.

51) Pilar Perales Viscasillas, “Applicable Law, The CISG, and The Futu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Villanova Law Review*, 58 *Vill. L. Rev.* 733, 2013, p.747.

52) Pilar Perales Viscasillas, *ibid.*, p.739.

53)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2016.10.31. 방문) 각주 (e). Upon ratifying the Convention, Germany declared that it would not apply article 1, paragraph 1 (b) in respect of any State that had made a declaration that that State would not apply article 1, paragraph 1(b).

54) 석광현, 상계논문, p. 243. 각주24에서 독일의 해석선언과 관련한 내용을 상술하고 있으니 참고바람.

55) 김상만, 전계논문, p.208.

56)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제14판, 박영사, 2016, p.154. ‘따라서 상품의 제조·가공·보관 등의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소가 아니며, 수급이나 주문접수 등과 같이 영업의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영업소가 아니다. 또한 고정적인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간이점포나 이동매장은 영업소가 될 수 없다.’

다만, CISG는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 당사자의 영업소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⁸⁾ 다시 말해, 영업소를 결정짓는 기준은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의 이행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으로, 계약체결 전이나 체결시 양당사자들이 알고 있었거나 고려하였던 상황들을 검토하여야 한다.⁵⁹⁾ 또한 영업소가 결정되면 CISG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제3자에게는 적용여부가 없다.⁶⁰⁾ 한편,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⁶¹⁾

유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적이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⁶²⁾ 중요한 것은 법인의 장소, 등록지, 주요영업소, 최고경영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과 이행이 CISG 체결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지 여부이다.⁶³⁾ 결국, 당사자의 영업소가 하나이거나 상거소가 영업소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가 체결국인지 여부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가 수개의 영업소 즉,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어떤 곳을 영업소로 보느냐가 CISG를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관련 판례

CISG의 적용여부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둘째, 각각 상이한 국가는 CISG 체결국이어야 한다. 즉, 체결국과 영업소이다.

1) 국제성 관련 판례

미국은 CISG 제1조 제1항 (b)의 간접적용을 배제하는 제95조를 유보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CISG 체결국 내에 있는 경우에만 협약을 적용한다. *Bruno* 사건의 법

57)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해설」, 법무부, 2005, p.5.

58) CISG art. 10.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a) ..., the place of business if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59) *American Mint LLC v. GOSoftware, Inc.*, 2005 WL 2021248, 3 (M.D.Pa. 2005).

60) *American Mint LLC v. GOSoftware, Inc.*, 2005 WL 2021248, 3 (M.D.Pa. 2005).

61) CISG art. 10(b).

62) CISG art. 1(3).

63) Howard O. Hunter, *Modern Law of Contracts*, March 2016, Thomson Reuters, § 23:7.

원은 각주1에서 양당사자가 CISG를 인용하고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CISG는 당사자 모두가 계약국인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미국과 비계약국인 영국과의 거래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⁶⁴⁾

Princesse D'Isenbourg Et Cie Ltd.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법원은 상이한 국가의 당사자 간 물품매매에 대한 계약은 계약국인 경우 CISG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CISG 비준하면서 제1조 제1항(b)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유보를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법원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만 계약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계약국이지만, 영국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 당사자와 다른 비계약국인 영국의 당사자간 거래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준거법 원칙에 의거하여 미국법이 적용된다. 즉, CISG 대신 매매계약에 대한 국내법인 UCC가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⁶⁵⁾

또한 *Prime Start Ltd* 사건에서 법원은 미국의 매도인과 영국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매수인간 매매계약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리면서, 그 근거로 영국버진아일랜드와 영국(the United Kingdom) 모두 제1조 제1항(a)의 계약국이 아니며, 미국은 제1조 제1항(b)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⁶⁶⁾ 미국법원은 제95조의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비계약국과의 거래에서는 CISG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2) 영업소 관련 판례

먼저, 영업소 결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도적인 사례로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은,⁶⁷⁾ 캘리포니아에 영업소를 둔 델라웨어 기업인 Asante와 영국 콜롬비아, 캐나다, 포틀랜드, 오리건에 영업소를 둔 델라웨어 기업인 PMC 간 분쟁이다.⁶⁸⁾ Asante는 PMC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허가받은 PMC 유통업자인 Unique Technologies를 통하여 전자적 매체로 구매주문서의 네 건을 제출했다 Asante는 다섯 번째 구매주문서를 직접 캐나다에 있는 PMC의 본사로 팩스를 보냈다.⁶⁹⁾ PMC의 부품은 PMC가 담보한 기술설명서에 부합하지 않았다.⁷⁰⁾ Asante는 주법원에 명시·묵시담보 위반으로 PMC를 고소하였으나, PMC는 Asante

64) *Bruno Rimini (Furniture) Ltd. v. Connor Marketing, Inc.*, 2015 WL 4530991, 3, (E.D. Cal. 2015) 각주 1 참조.

65) *Princesse D'Isenbourg Et Cie Ltd. v. Kinder Caviar, Inc.*, 2011 WL 720194, 8 (E.D. Ky. 2011) 각주 3 참조.; 켄터키 주법은 CISG를 포함하지만, 제95조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CISG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켄터키 주법인 UCC제2편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66) *Prime Start Ltd. v. Maher Forest Product, Ltd.*, 442 F. Supp. 2d 1113, 1118 (W.D. Wash. 2006).

67)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N.D. Cal. 2001).

68)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1148 (N.D. Cal. 2001).

69)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1148-1149 (N.D. Cal. 2001).

의 주장은 CISG에 의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요청했다.⁷¹⁾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Asante는 PMC가 캐나다에 본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PMC의 캐나다 사무소와 한번 이상 직접 거래를 했다. 둘째, Asante가 소송을 제기한 부품 모두 캐나다에서 제조되었다. 셋째, Asante의 소송에 따른 모든 PMC의 대표들은 캐나다에 있는 PMC의 회사본사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PMC의 오리건 지점이나 Unique의 캘리포니아 지점보다 오히려 PMC의 캐나다 본사가 CISG 제10조의 목적에 따른 PMC의 “영업소”라고 판결하였다.⁷²⁾ 미국법원은 소송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관리가 일어나는 곳을 영업소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왜 오리건 공장과 맺은 네건의 계약보다 캐나다 본사와 맺은 한 건의 계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VLM Food Trading Intern., Inc.* 사건에서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CISG는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에 적용되며⁷³⁾,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둔 경우, 영업소는 계약 및 이행에 가장 근접한 관련을 가진 곳이라고 하였다.⁷⁴⁾ 또한 계약 당사자들은 협약을 배제할 수 있다.⁷⁵⁾ 하지만 양당사자는 협약을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은 유일한 문제는 VLM의 영업소가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여부이다. 이에 지방법원은 영업소는 뉴저지의 사무실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에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 일리노이주법을 적용하였다.⁷⁶⁾ 하지만 *Illinois Trading*과의 계약이행을 포함하여 VLM의 대부분의 거래는 몬트리올 근처의 본사에서 이행되었다. 이에 항소법원은 VLM가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거래를 이행하고 있음에 논쟁의 여지가 없고 뉴저지 사무소는 단지 미국과의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영업소는 캐나다에 있으며 따라서 해당사례에는 CISG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⁷⁷⁾ 이후 이러한 결정은 계약에 대한 지방법원의 해석을 새롭게 검토한 항소법원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⁷⁸⁾

McDowell Valley Vineyards, Inc. 사건에서,⁷⁹⁾ 법원은 프랑스의 매도인과 미국의 매수인 간 계약분쟁으로, 미국의 매수인이 주로 캘리포니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프랑스 매도인의 완

70)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1148 (N.D. Cal. 2001).

71)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1150-1151 (N.D. Cal. 2001).

72)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1148-1149 (N.D. Cal. 2001).

73) CISG Art. 1.

74) CISG. Art. 10.

75) CISG. Art. 6.

76)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inois Trading Co.*, 748 F.3d 780, 787 (7th Cir. 2014).

77)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inois Trading Co.*, 748 F.3d 780, 787 (7th Cir. 2014).

78)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inois Trading Co.*, 811 F.3d 247, 251 (7th Cir. 2016).

79) *McDowell Valley Vineyards, Inc. v. Sabate USA Inc.*, 2005 WL 2893848 (N.D. Cal. 2005).

전소유자회사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⁸⁰⁾ 그리고 매도인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관련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largely)” 캘리포니아 자회사에서 왔으므로 해당분쟁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⁸¹⁾ *Golden Valley Grape*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CISG는 해당계약에 준거법조항이 달리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국가가 체약국이라면 상이한 국가,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의 매매에 대한 계약에 적용되는 것” 임을 거듭 강조하였다.⁸²⁾ *Gibraltar Trading Corp.* 사건에서, 법원은 연방관할으로 소송이관을 기각하면서, 양당사자가 두 개의 상이한 서명국이 아니라 미국내 영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⁸³⁾ 이처럼 미국법원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미국자회사 간 계약은 양당사자가 동일한 국가 즉,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CISG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CISG에서 영업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법원이 CISG를 준거법으로 삼더라도 여전히 자의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⁸⁴⁾

3. 합의

미국법원에서 CISG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는 체약국과 영업소이다.

첫째, 체약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간접적용을 배제한다는 제95조 유보를 했기 때문에 비체약국과의 거래에서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CISG 체약국이므로 당사자들이 CISG를 배제하지 않는 한 양국간 거래는 CISG가 적용된다. 현재 85개의 체약국과의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미국이 비체약국과의 거래에서 준거법이 미국법이 되는 경우엔 CISG가 아닌 UCC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체약국 거래에만 CISG를 적용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여부는 우리나라보다 더 명확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업소와 관련하여 미국은 계약체결이나 이행이 실제 어느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영업소에 대한 인식은 계약이행시가 아니라 계약체결 이전이나 계약체결시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영업소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행하여지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곳으로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항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McDowell*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관련자가 대체로 캘리포니아의 자회사에서 왔기 때문

80) *McDowell Valley Vineyards, Inc. v. Sabate USA Inc.*, 2005 WL 2893848, 3-4 (N.D. Cal. 2005).

81) *McDowell Valley Vineyards, Inc. v. Sabate USA Inc.*, 2005 WL 2893848, 4 (N.D. Cal. 2005).

82) *Golden Valley Grape Juice & Wine, LLC v. Centrisys Corp.*, 2010 WL 347897, 2 (E.D. Cal. 2010).

83) *Gibraltar Trading Corp. v. PMC Specialties Group, Inc.*, 851 F. Supp. 2d 437, 441 (E.D. N.Y. 2011).

84) 하충룡,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12, p.222.

에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체로(largely)’라는 그 비중을 결정짓는 기준이 어느 정도 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또한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가 됨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러한 영업소가 계약의 체결과 가장 밀접한 곳이 중요한지 혹은 계약의 이행과 가장 밀접한 곳이 중요한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IV. 당사자자치에 의한 CISG 적용배제

1. 합의배제와 당사자자치(CISG 제6조)

CISG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⁸⁵⁾ 본 연구의 취지상 당사자들이 CISG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배제로 그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사실 제6조는 CISG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매매법의 통일에 혼란을 주고 저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었다.⁸⁶⁾ 왜냐하면 CISG 제6조는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CISG를 전부 배제하거나 일부 임의규정을 다른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자에게 주어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CISG는 당사자간 사적계약에는 우선하지 않고 다만, 계약의 조항을 해석하고 계약의 문구에 흠결을 채우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⁸⁷⁾ 실제로 제6조는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CISG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⁸⁾ 이러한 배제(opt-out)조항은 CISG이외 법이 당사자들의 계약 전부 혹은 일부에 적용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당사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⁸⁹⁾

그러나 제6조는 당사자들이 거래에서 명시적으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해야만 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는 준거법조항에 특정 주법이나 국가의 법을 선정함으로써 묵시적으로 CISG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⁰⁾ 예를 들어, CISG 비계약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CISG의 적용은 묵시적

85) CISG 제2조에서 제5조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86) James E. Bailey, “Facing The Truth: Seeing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an Obstacle to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32 *Cornell Int'l L. J.* 273, 1999, p.302.

87) Howard O. Hunter, *Modern Law of Contracts*, March 2016, Thomson Reuters, § 23:5.

88) CISG art. 6.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89) 우광명, “국제상사거래에서의 UNIDROIT 원칙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09, p.458.; *Ajax Tool Works, Inc. v. Can-Eug Mfg. Ltd.*, 2003 WL 223187, (N.D. Ill. 2003), p.3.

배제가 가능하다고 본다.⁹¹⁾

한편, 미국법원은 다수사례에서 계속해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CISG를 배제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단순히 CISG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특정 주 혹은 국가의 법을 준거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판결하고 있다.⁹²⁾

2. 관련 판례

사실 CISG의 배제에 대한 분석에서 준거법조항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보통 제6조를 해석한 사례들은 CISG의 적용을 유효하게 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계약을 검토한다.

먼저 CISG의 합의배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만한 사건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OrthoTec*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준거법 조항에 “캘리포니아 법”이라고 삽입함으로써 CISG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CISG는 적용되지 않았다.⁹³⁾ 당사자들이 준거법조항에 단순히 캘리포니아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ISG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⁹⁴⁾ 단순히 준거법조항 그 자체가 CISG의 적용 배제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⁹⁵⁾ 2010년 *Golen Valley Grape Juice & Wine LLC* 사건에서도 법원은 CISG는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있는 당사자 간 물품매매에 대한 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국가는 계약국이어야 하고, “해당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⁹⁶⁾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계약상 준거법조항이 없다는 것이 CISG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Fisher* 사건에서 CISG의 유효한 배제 문구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ITC and Fisher Industries와 Thyssen간 모든 법적 관계는 일반거래조건에 더하여 국내당사자간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독일의 실체법을 따른다. 1980년 4월 11일 CISG의 규정은 배제되어 진다.”⁹⁷⁾ 또한

90) Bojidara Borisova,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6 of the CISG”,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9 VJ 153, 2005, p.157.

91) 석광현, 전게서, p.60.

92) Howard O. Hunter, *Modern Law of Contracts*, March 2016, Thomson Reuters, § 23:5.

93) *OrthoTec, LLC v. Eurosurgical, S.A.*, 2007 WL 1830810, 12 (Cal. Ct. App., 2007).

94) Kina Grbic, *op. cit.*, p.185.

95) William P. Johnson, “Understanding Exclusion of the CISG : A New Paradigm of Determining Party Intent”, *Buffalo Law Review*, 59 *Buff. L. Rev.* 213, January 2011, p.216.

96) *Golden Valley Grape Juice and Wine, LLC v. Centrisys Corp.*, 2010 WL 347897, 2 (E.D. Cal. 2010).

97) *Fisher v. Thyssen Mannesmann Handel GmbH*, 2006 WL 211858, 1 (N.D. Ill. 2006) “All legal relations between [ITC and Fisher Industries] and [Thyssen] shall be subject to German substantive law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s between domestic parties in addition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f April 11, 1980 shall be excluded.”

*Asante*사건의 법원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캘리포니아 상법전” 혹은 “미국 UCC”와 같이 간단히 특정 법체를 확인하는 것도 있다.⁹⁸⁾ 단지 캘리포니아주법 혹은 미국법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Travelers Property Cas. Co. of America 사건에서 원고가 CISG 적용을 주장하자, 피고인 Saint-Gobain은 구매지시서의 준거법조항이 미네소타주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므로 미네소타 주의 UCC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미네소타주법은 CISG를 포함하므로 CISG 제1조에 의거하여 CISG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양 당사자가 CISG 체결국에 있기 때문에, CISG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CISG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특정 주의 법을 참조하는 것이 CISG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⁹⁾ *Roser Technologies, Inc.*사건에서 매수인인 Roser는 미국에 매도인인 Carl은 독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양국은 CISG 체결국이기에 때문에 해당거래에는 CISG가 적용된다.¹⁰⁰⁾ 하지만 계약서상 준거법조항은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CISG 제6조제 의거하여 당사자들은 CISG 적용의 배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계약에 확정적으로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¹⁾ 즉, 해당 법원은 계약문구가 구체적으로 CISG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독일법”은 독일이 CISG를 비준한 이래 CISG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다수의 사건들에서 지지되고 있다.¹⁰²⁾

한편, *Olivaylle Pty. Ltd. v. Floweg GmbH Co.*에서, 당사자의 계약상 준거법 조항은 ‘오스트

98)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1150 (N.D. Cal. 2001).

99) *Travelers Property Cas. Co. of America v. Saint-Gobain Technical Fabrics Canada Ltd.* 474 F.Supp.2d 1075, 1081-1082 (D. Minn. 2007).

100) *Roser Technologies, Inc. v. Carl Schreiber GmbH*, 2013 WL 4853314, 6-7 (W.D. Pen. 2013)

101) *Roser Technologies, Inc. v. Carl Schreiber GmbH*, 2013 WL 4853314, 7 (W.D. Pen. 2013)

102) *BP Oil Intern., Ltd. v. Empresa Estatal Petroleos de Ecuador*, 332 F.3d 333, 337, (5th Cir. 2003) ‘CISG에 대한 서명국의 동의는 필연적으로 조약이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CISG는 에콰도르법이며, 준거법조항을 에콰도르법으로 한 것은 단지 CISG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American Mint LLC v. Gosoftware, Inc.*, 2006 WL 42090, 3 (M.D. Pa. 2006) ‘주장된 계약의 경우 준거법을 조지아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명시적으로 CISG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ISG는 달리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매매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Ajax Tool Works, Inc. v. Can-Eng Mfg. Ltd.*, 2003 WL 223187, 3 (N.D. Ill. 2003) (“당사자들의 계약에 ‘본 합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명백하게, 해당 조항은 CISG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비록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온타리오 주를 지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온타리오 주법만이 아니다; 오히려 CISG가 온타리오법이기에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CISG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Intoxicating, Inc. v. Maritim Hotelgesellschaft mbH*, 2013 WL 3973975 (M.D. Pa. 2013) “펜실베이니아의 주법은 CISG를 배제하지 않는다.”; *Microgem Corp., Inc. v. Homecast Co., Ltd.*, 2012 WL 1608709 (S.D.N.Y. 2012) “뉴욕주법은 CISG를 적용한다.”; *Remy, Inc. v. Tecnomatic, S.p.A.*, 2010 WL 4174594 (S.D. Ind. 2010) “인디애나 법은” CISG를 포함한다.’; *Travelers Property Cas. Co. of America v. Saint-Gobain Technical Fabrics Canada Ltd.*, 474 F.Supp.2d 1075 (D. Minn. 2007) “‘미네소타법’은 CISG를 배제하지 않는다.’

레일리아 법을 적용하고, 본 조는 “UNCITRAL 법”을 배제한다’고 합의하였다.¹⁰³⁾ 법원은 CISG는 국내화된 조약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이지만, CISG는 “UNCITRAL 법”의 일부이므로 배제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UNCITRAL은 하나의 기구(organization)이지 국가(state)는 아니다.¹⁰⁴⁾ 그렇다면 법원에서 결정한 해석이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합의

준거법의 선택에 대한 당사자자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법뿐만 아니라 법원칙으로까지 당사자 자유로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존중되어야 하는 당사자자치원칙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통일법인 CISG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통하여 CISG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배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미국은 CISG 규정들이 UCC와 충돌되는 경우 CISG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¹⁰⁵⁾ 그러나 법률문헌이나 판례에서의 지배적인 시각은 CISG 체결국에서 준거법분석은 CISG를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유효한 배제는 계약상 배제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법원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CISG를 배제한 경우, 일관되게 다른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인정해 오고 있다.

미국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명시적인 합의배제는 당사자간 약정에 “CISG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기거나 혹은 “CISG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법” 혹은 “미국의 UCC”와 같은 특정 법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사건에서와 같이 ‘UNCITRAL 법은 배제한다’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UNCITRAL은 하나의 기구이지 법체가 아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CISG 체결국이 비준을 통하여 협약이 국내법화 되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향후 각국의 판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준거법의 결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이로써 당사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물품매매에 미국의 UCC는 서면성을, CISG는 계약방식의 자유를 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유효성과 관련한 문제가 준거법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가 전

103) 참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hoice of law clause in the contract provided that Australian law applied and the clause went on to exclude “UNCITRAL law”.’

104) Howard O. Hunter, *Modern Law of Contracts*, Chapter 23.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rch 2016 Update. §23:5 재인용.

105) 하충룡, 전게논문, p.204.

혀 달라진다. 이는 준거법 조항에 대한 미국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확한 준거법 문언을 작성하여야 한다.

V. 결론

CISG가 가진 불완전성 등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가입국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요구이며 국제상거래법의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CISG가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계약국에서의 통일적인 해석이다. 즉, 계약국들은 자기편향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물론 미국법원의 사례들을 통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UCC를 참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나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 결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국제상거래에서 미국법원의 판결방향을 다시 우회시키지는 않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CISG에 가입하였고 다른 법체이지만, 주요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하여, 협약의 적용을 위한 기본요건인 국제성과 영업소, 그리고 양당사자가 협약의 적용배제를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미국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CISG는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계약법으로, 자기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CISG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를 하는 기업들을 비롯하여 관련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비 실무자들인 대학생들에게 관련 대학에서 CISG를 가르치고 알려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실제 무역 관련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CISG를 얼마나 가르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미국의 UCC나 우리나라의 민법과 상법과는 전혀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CISG와 미국의 UCC, 우리나라의 민법과 상법 규정이 항상 보완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에 있어서 서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CISG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CISG는 계약의 체결과 성립,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당사자의 능력, 대리, 소유권 이전 등은 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CISG는 거래 당사자의 ‘영업소가’가 상이한 ‘채약국’에 있는 경우의 물품매매계약에 ‘당사자의 명시적인 배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협약은 영업소 등 주요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따라서 채약국들은 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국내법적 개념을 참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조만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 개념들은 국제적인 개념으로 CISG 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 채약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제95조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용은 하지 않는다. 즉, 채약국과의 거래에서만 CISG를 직접적용한다. 둘째, 영업소의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계약체결과 가장 밀접한 곳인지 계약이행과 가장 밀접한 것인지 여부는 본안사안의 쟁점이 계약체결과 이행 가운데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경영관리와 이행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영업소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ISG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미국은 제95조를 통하여 간접적용의 배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국제사법의 적용에 따른 사안들을 미국법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국과의 거래시 CISG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으로 CISG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시적 배제’의 원칙은 연방법원의 판례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제기구인 UNCITRAL 법을 배제한다고 한 경우, 이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묵시적 배제를 원한다면 비채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법원에서의 준거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국제상거래에서 중재의 활용을 미루어 본다면, 중재재판부에서의 CISG를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도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05.
- 김선국(a), “CISG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2014-5)의 동향-1”,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0.
- 김선국(b),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재산법학회』 제3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08.

- 김용의, “CISG를 적용한 최근 미국 판례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1.
- 서헌제, “주요국에서의 CISG의 적용과 우리의 과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8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9.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손태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상의 통일성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의 태도와 그 개선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08.
- 우광명, “국제상사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09.
- 이재민, “우리 법원에서의 통상협정의 해석과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 임재욱,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06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제14판, 박영사, 2016.
-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해설」, 법무부, 2005.
- 하충룡,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12.
- Bojidara Borisova,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6 of the CISG”,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9 VJ 153, 2005.
- Christopher C. Kokoruda,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It’s Not Your Father’s Uniform Commercial Code”, *Florida Bar Journal*, 85-JUN Fla. B.J. 103, June 2011.
- Howard O. Hunter, *Modern Law of Contracts*, Chapter 23.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rch 2016 Update.
- James E. Bailey, “Facing the Truth : Seeing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an Obstacle to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Cornell International*

- Law Journal*, 32 *Cornell Int'l L. J.* 273, 1999.
- Kina Grbic, "Putting the CISG Where It Belongs :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ouro Law Review*, 29 *Touro L. Rev.* 173, 2012.
- Kristen David Adams · Candace M. Zierd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siness Law Today*, 2015-JUN *Bus. L. Today* 1, June 2015.
- Pilar Perales Viscasillas, "Applicable Law, The CISG, and The Futu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Villanova Law Review*, 58 *Vill. L. Rev.* 733, 2013.
- Susan J. Martin-Davidson, "Selling Goods Internationally : Scope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 *Mich. St. J. Int'l L.* 657, 2008-2009.
- William P. Johnson, "Understanding Exclusion of the CISG : A New Paradigm of Determining Party Intent", *Buffalo Law Review*, 59 *Buff. L. Rev.* 213, January 2011.
- Ajax Tool Works, Inc. v. Can-Eng Mfg. Ltd.*, 2003 WL 223187 (N.D. Ill. 2003).
- Am. Biophysics Corp. v. Dubois Marine Specialties*, 411 F. Supp. 2d 61 (D.R.I. 2006).
- American Mint LLC v. GOSoftware, Inc.*, 2005 WL 2021248, (M.D. Pa. 2005).
- American Mint LLC v. Gosoftware, Inc.*, 2006 WL 42090 (M.D. Pa. 2006).
- Asante Technologies, Inc. v. PMC-Sierra, Inc.*, 164 F. Supp. 2d 1142 (N.D. Cal. 2001).
- BP Oil Int'l, Ltd. v. Empresa Estatal Petroleos de Ecuador*, 332 F.3d 333 (5th Cir. 2003).
- Bruno Rimini (Furniture) Ltd. v. Connor Marketing, Inc.*, 2015 WL 4530991 (E.D. Cal. 2015)
- Chateau des Charmes Wines Ltd. v. Sabate USA Inc.*, 328 F.3d 528 (9th Cir. 2003).
- Chi. Prime Packers, Inc. v. Northm Food Trading Co.*, 408 F.3d 894 (7th Cir. 2005).
- Delchi Carrier v. Rotorex Corp.*, 71 F.3d 1024 (2d Cir. 1995).
- Fisher v. Thyssen Mannesmann Handel GmbH*, 2006 WL 211858 (N.D. Ill. 2006).
- Genpharm Inc. v. Pliva-Lachema a.s.*, 36 F.Supp.2d 49 (E.D.N.Y. 2005).
- Gibraltar Trading Corp. v. PMC Specialties Group, Inc.*, 851 F. Supp. 2d 437 (E.D. N.Y. 2011).
- Golden Valley Grape Juice & Wine, LLC v. Centrisys Corp.*, 2010 WL 347897 (E.D. Cal. 2010).
- Intoxicating, Inc. v. Maritim Hotelgesellschaft mbH*, 2013 WL 3973975 (M.D. Pa. 2013).
- McDowell Valley Vineyards, Inc. v. Sabate USA Inc.*, 2005 WL 2893848 (N.D. Cal. 2005).
- Medellin v. Texas*, 128 S.Ct. 1346 (2008).
- Microgem Corp., Inc. v. Homecast Co., Ltd.*, 2012 WL 1608709 (S.D.N.Y. 2012).

- OrthoTec, LLC v. Eurosurgical, S.A.*, 2007 WL 1830810 (Cal. Ct. App. 2007).
- Prime Start Ltd. v. Maher Forest Product, Ltd.*, 442 F. Supp. 2d 1113 (W.D. Wash. 2006).
- Princesse D'Isenbourg Et Cie Ltd. v. Kinder Caviar, Inc.*, 2011 WL 720194 (E.D. Ky. 2011).
- Remy, Inc. v. Tecnomatic, S.p.A.*, 2010 WL 4174594 (S.D. Ind. 2010)
- Roser Technologies, Inc. v. Carl Schreiber GmbH*, 2013 WL 4853314 (W.D. Pen. 2013).
- Travelers Property Cas. Co. of America v. Saint-Gobain Technical Fabrics Canada Ltd.* 474 F.Supp.2d 1075 (D. Min. 2007).
- U.S. Nonwovens Corp. v. Pack Line Corp.*, 4 N.Y.S.3d 868 (N.Y.Sup 2015).
-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inois Trading Co.*, 748 F.3d 780 (7th Cir. 2014).
-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inois Trading Co.*, 811 F.3d 247 (7th Cir. 2016).
- WHITNEY et al. v. ROBERTSON*, 8 S.Ct. 456 (1888).
- <http://www.uncitral.org> (11.2016)
- <http://cisgw3.law.pace.edu> (11.2016)
- <http://1.next.westlaw.com> (11.2016)

ABSTRACT

Implications for the CISG's Applicability concerning
U.S. Court's Cases*

Na-hee Han** · Choong-lyong Ha***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endeavors to increas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he creation of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The CISG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f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Despite the importance of a definition for 'place of business,' the CISG does not provide one. Lack of a definition of 'place of business' may cause problems for parties trying to determine whether the CISG applies to their contract. Also Contracting parties can opt out of the CISG. But the CISG does not state whether the parties must expressly exclude the CISG's application to a transaction or whether they might do so by implication. we need to consider how effectively opt out of the CISG.

Under U.S. law, the CISG is considered to be a self-executing treaty. So the CISG's provisions apply directly as substantive sales law to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espite the CISG's political and economic significance to U.S., U.S. Courts have overlooked the terms of the CISG.

This article considered how to the CISG was recognized,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S. Courts in related cases.

Key Words : CISG's Applicability, self-executing treaty, place of business, opt-out of the CISG.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Trade BK21+ (FTA and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s Incubator Center for Suppor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 Main Author, BK+ Post-Doctor,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 Correspondent Author,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